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83

발의연월일: 2025. 3. 24.

발 의 자:문진석・김교흥・권향엽

이건태 • 박정현 • 이연희

조인철 • 윤종군 • 김기표

강준현 · 손명수 · 한정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등으로 하여금 빈집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한국부동산원 또는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별 조사수행기관이 다르며 조사결과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 빈집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를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원활한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는 소유자등의 빈집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소유자등의 관리 및 정비 책임을 명시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빈집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빈집 관련 시책을 효율적

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빈집 소유자등의 관리·정비 책임을 명시하고, 철거명령을 자진이행한 저소득층 빈집 소유자의 경우 비용 지원을 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을 정비・관리・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 은 빈집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를 "소유자등에게"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등"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등"으로, "실태조사를"을 "실태조사 또는 제15조에 따른 빈 집정보시스템 구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장·군수등" 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등"으로 한다.

제1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소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인 경우 시장·군수등은 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시·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시·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시·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한다.

제2장제3절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빈집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빈집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의 정비·유지 및 활용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연구기관 또는 빈집정비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범위, 공표시기 및 방법과 제2

항에 따른 자료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① 국
	<u>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을</u>
	정비・관리・예방하기 위한 종
	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
	<u>다.</u>
	②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
	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은 빈집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6조(빈집등에의 출입) ① (생	제6조(빈집등에의 출입)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시장・군수등 또는 제5조제	2
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빈집등 및 그 대	
지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하는	
날 7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u>소유자등에</u>
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	<u>게</u>
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일	
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	
만, 소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	
명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8조(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① 시장 ·군수등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 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u>시장·군수등</u>은 제1항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11조(빈집의 철거 등) ① ~ ⑥ (생 략) <신 설>

	③ (현행과 같음)
제	8조(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① <u>국토</u>
	교통부장관, 시장・군수등
	실태조사 또는 제15조
	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u> </u>
	1. ~ 4.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
	군수등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	11조(빈집의 철거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저 ① <u>시·도지사</u>는 실태조사 결 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 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 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생략)

- ③ 시·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 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 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 ④ <u>시·도지사</u>는 빈집정보시스 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 문기관이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의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
한 빈집 소유자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저소득층인 경우 시
<u>장</u> ·군수등은 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
지사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
지사
④ <u>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u>
지사

- ⑤ 시·도지사는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빈집정보 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 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관련 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정보는 관할구역의 시· 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 공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인터넷과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5)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
<u> </u>	<u> </u>	
	·	
6	<u>국토교통부장관</u>	및 시・도
<u>지</u>	<u>\}</u>	
제153	조의2(빈집 관련	통계의 작
<u>성</u>	및 관리) ① 국	<u>토교통부장</u>
<u>관</u>	은 빈집에 관한 /	시책을 효율
<u>적</u>	으로 수립・시행히	하고 빈집정
비/	나업을 활성화하	기 위하여
<u>빈</u>	집의 정비・유지	및 활용에
<u>관</u>	한 통계를 매년	작성 • 관리
<u>하.</u>	고 공표하여야 한	<u>다.</u>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연구기관 또는 빈집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①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범위, 공표시기 및 방법 과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

법」을 준용한다.